

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

사 건 20 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

당사자 부 성 명
주민등록번호 -

모 성 명
주민등록번호 -

협 의 내 용

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(□에 ✓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

자녀 이름	성별	생년월일(주민등록번호)	친권자	양육자
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년 월 일 (-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
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년 월 일 (-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
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년 월 일 (-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
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	년 월 일 (-)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모 공동

2. 양육비용의 부담 (□에 ✓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

지급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	지급받는 사람	<input type="checkbox"/> 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모
지급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금		<input type="checkbox"/> 일시금
지급액	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미성년자 1인당 매월 금 _____ 원 (한글 병기: _____ 원)		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에 관하여 금 _____ 원 (한글 병기: _____ 원)
지급일	매월 일		년 월 일
기타			
지급받는 계좌	() 은행 예금주: _____ 계좌번호: _____		

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요령

- ※ 미성년인 자녀(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,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)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**양육과 친권자결정**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※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, 친생부모는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※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- ※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, 협의한 내용이 **자녀의 복리**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.
- ※ 이혼신고일 다음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**양육비부담조서**가 작성되며,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그 외 협의 사항은 **‘별도의 재판절차’**를 통하여 과태료,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,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- ※ 협의서 작성 전에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.

1.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

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,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,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협의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,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,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(**공동친권,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**에만 바람직하며, 각자의 권리·의무, 역할,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).

임신 중인 자의 특징은 자녀 이름난에 ‘모가 임신 중인 자’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‘임신 ○개월’로 기재함으로 하고,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2. 양육비용의 부담

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.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, 자녀의 수,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.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“기타”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,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,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.

3.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

「민법」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(비양육친)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,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.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**정기적·규칙적**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,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, 면접교섭 장소, 면접교섭 시 주의 사항(기타 란에 기재)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4. 첨부서류

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,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.

5. 기타 유의사항

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,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